

# 제한경쟁 사유서

건 명: 5~8호선 환기구 등 청소용역

제한내용

○ 중소기업자

관련근거

○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
제6조(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·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(이하 "경쟁제품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7조(경쟁 제품의 계약방법)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(이하 "중소기업자간 경쟁"이라 한다)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○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-13호
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

[제품군: 기타, 제품명: 일반건물및사무실청소업, 세부품명번호: 7611150101]

제한사유

○ 본 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합니다.

2020. 4. 22.

작성자 : 기계2사업소 사 원 이 하 준 (인) *이하준*

확인자 : 기계2사업소 소 장 최 진 영 (인) *최진영*